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정청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554

발의연월일: 2021. 1. 21.

발 의 자:정청래·고영인·양이원영

김승원 · 최혜영 · 송갑석

김영배 • 이수진 • 임오경

전혜숙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국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8살 아이를 친모가 살해한 사건이 일어나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.

현행법에 따르면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출생자의 출생 후 1개월이내에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·읍·면의 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어 부모가 고의적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가가 아이의 출생사실을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임.

이 경우 아이가 학대·방임 또는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때까지도 보호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 출생신고의무자의 범위를 넓힐필요가 있음.

이에 의사·조산사 등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출생지의 지자체의 장에게 출생증명서를 송부하도록 하고, 지자체의 장이 이를 수리한 때에 출생신고가 된 것으로 봄으로써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(안

제46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6조의2(출생증명서의 송부) ① 의사·조산사 등 분만에 관여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출생증명서를 작성하여 출생 후 10일 이내에 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송부된 출생증명서를 수리한 때에 출생의 신고가 된 것으로 본다.

- 1. 자녀의 성별
- 2.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
- 3. 모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
- 4. 작성연월일
- 5. 작성자의 성명, 직업 및 주소
- ② 출생증명서의 작성 및 송부·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출생증명서의 송부에 관한 적용례)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46조의2(출생증명서의 송부) ①
	의사·조산사 등 분만에 관여한
	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
	포함한 출생증명서를 작성하여
	출생 후 10일 이내에 출생지를
	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
	게 송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
	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송부된
	출생증명서를 수리한 때에 출
	생의 신고가 된 것으로 본다.
	<u>1. 자녀의 성별</u>
	2.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
	3. 모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
	<u>4. 작성연월일</u>
	5. 작성자의 성명, 직업 및 주
	<u>소</u>
	② 출생증명서의 작성 및 송
	<u>부·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</u>
	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